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 2 월24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건설교통부 추 병 직
장 관**

●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

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목”으로 하며, 동호다목 단서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법 제4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중 “제64조 및 제65조”를 “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7조”를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

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5항 전단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관리규약”으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입주자등외의 자”를 “입주자등 외의 자”로 하며, 동항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동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료 동의를 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에어컨이 켜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

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를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5항 전단중 “제2종 및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제2종국민주택

채권”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전단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및 이 영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협회”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 4.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허가기준 및 동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

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7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호다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한다.

별표 12 제1호라목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바목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호사목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단서중 “도시철도법시

행령 별표”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호나목(1)중 “민법”을 “「민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목(2)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중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입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6호가목의 매입금액란중 “500,000”을 “100,000”으로 하고, 동호나목의 매입금액란중 “100,000”을 “50,000”으로 하며,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1)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로 하며, 동호다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6호다목중 “일반음식점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로 하고, 동 부표 제18호중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가목(1)(가)중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을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동 부표 제27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위반행위란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공공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

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필요 동의율의 완화(영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1)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사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모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함.
- (3)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영 제45조의2제2항, 안 동조제3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최대 5년이므로 건축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후 전매제한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함.

(3)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 계약시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
에 동의하는 비율(영 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1)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

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
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영 제57조제1항제21호 신설)

(1)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벽·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여 입주민의 생활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영 제76조제1항, 안 제118

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고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주관기관 및 시험실시 횟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바.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확대(영 제95조제4항)

(1)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특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규주택의 분양가와 주변지역 주택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3)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2 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소아용의약품(이하 “소아용의약품”이라 한다)에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또는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컵 또는 계량스푼 등을 사용할 것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법 제57조의2의 규정에